



[서식 예] 고소장 표준서식 작성례(사기)

고 소 장(예시 / 사기죄)

1. 고소인

성 명	김 갑 동	주민등록번호	6△△△△△ - ×××××××
주 소	서울 00구 00길 00		
직 업	회사원	사무실 주소	서울 00구 00길 00
전 화	(휴대폰) 010-100-0000 (주택) 02-100-000 (사무실) 02-200-0000		
이메일	kingd@◇◇.co.kr		

2. 피고소인

성 명	이 사 기	주민등록번호	5△△△△△ - ×××××××
주 소	서울 00구 00길 00		
직 업		사무실 주소	
전 화	(휴대폰) 010-900-0000		
이메일	leesagi@◇◇.com		
기타사항	고소인과의 관계 : 거래상대방으로서 친·인척 관계는 없음		

3.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범죄사실

- 피고소인은 분양대행사인 (주)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행세하는 자입니다.
- 2013. 3. 2. 16: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, 피고소인은 서울 00구 00길 00상가를 고소인에게 분양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“00상가를 급하게 팔려는 사람이 있으니 컨설팅비 1,000만원을 주면 시세보다 20%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”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. 3. 10.경 컨설팅비로 금 1,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.

5. 고소이유

- 고소인은 00주식회사 00부에서 근무 중이며,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친구 강00으로부터 2013. 2.초에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.
- 피고소인은 자신이 (주)00부동산컨설팅 분양팀장으로 근무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한 후 2013. 2.말경 고소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방금 나온 좋은 매물이 라면서 00상가를 추천하였습니다.
- 이에 고소인은 2013. 3. 2. 16:00경 서울 강남구 00길 00번지에 있는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소인은 “00상가의 주인이 다른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상가 101호를 급히 매물로 내놓았다. 컨설팅비 1,000만원을 주면 00상가를 시세보다 20%정도 싼 가격에 상가를 분양받도록 해 주고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금융기관 대출도 알선해 주겠다”고 하기에 이를 믿고 피고소인과 컨설팅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.
- 고소인은 2013. 3. 10.경 00은행에 있던 고소인의 예금 중 1,0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그 날 14:00경 위 00커피숍에서 피고소인에게 컨설팅비로 주었습니다.
-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(주)00부동산컨설팅으로 피고소인을 찾아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피고소인이 분양팀장으로

근무한 바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전에도 유일로 문의전화가 여러 통 왔었다고 하였습니다.

- 이에 고소인은 00상가 관리사무소에 들러 확인해 보니 101호는 상가 주인이 팔려고 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은 그 후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이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6. 증거자료

-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.
-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.
 - ☞ 증거자료의 세부내역은 별지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

① 중복 고소 여부	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/ 없습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	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/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	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/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13년 9월 5일

고소인 김 갑 동 (인).

○○지방경찰서 귀중



별지 : 증거자료 세부 목록

1. 인적증거

성 명	강00	주민등록번호	6△△△△△ - ×××××××	
주 소	자택 :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: 서울 00구 00길 00		직업	회사원
전 화	(휴대폰) 010-100-0000 (자택) 02-200-0000 (사무실) 02-100-0000			
입증하려는 내용	강00은 고소인의 친구이며,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컨설팅비를 요구하면서 00상가를 싸게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2006. 3. 2. 고소인과 같이 들었음			

성 명	이00	주민등록번호	5△△△△△ - ×××××××	
주 소	자택 : 서울 00구 00길 00 직장 : 서울 00구 00길 00(주)00부동산컨설팅		직업	(주)00부동산컨설팅 총무과장
전 화	(휴대폰) 010-200-0000 (사무실) 02-600-0000			
입증하려는 내용	피고소인이 (주)00부동산컨설팅 직원도 아니면서 마치 위 회사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			

성 명	박00	주민등록번호	6△△△△△ - ×××××××	
주 소	직장 : 서울 00구 00길 00상가 관리사무소		직업	00상가 관리 사무소장
전 화	(휴대폰) 010-300-0000 (사무실) 02-200-0000			
입증하려는 내용	00상가 101호는 상가 소유자가 팔려고 한 적도 없다는 사실			

2. 증거서류

순번	증거	작성자	제출 유무
1	컨설팅 계약서(사본)	피고소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2	예금통장(사본)	고 소 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3	영수증(사본)	피고소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
※ 예금통장 사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컨설팅비 1,000만원을 2006. 3. 10.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며 증거서류 원본은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음

3. 증거물

순번	증거	소유자	제출 유무
1	피고소인의 명함(사본)	고소인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2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3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접수시 제출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사 중 제출

4. 기타 증거

○ 없음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 소 시 호	10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 추 요 건	※ 아래(2) 참조 (형법 354조, 328조)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 련 법 규	형법 347조
범 죄 성 립 요 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·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		
형 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0년 이하의 징역 ·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(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53조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 절차 및 기간	(항고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거 : 검찰청법 10조 ·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(재정신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·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(헌법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·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(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“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친고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다.”고 규정함)

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

1.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2.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
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